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검토

資料整理 吳 編輯：金 正 夫
白 善 基
金 淩 相

머 리 말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는 국제화·개방화라는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의 관리조직인 농지개량조합의 운영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지개량조합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다.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의 제정에 앞서 본 연구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고, 이 책자는 1996년 2월 10일(토)충청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의내용은 앞으로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을 확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으며, 그 기록을 정리한 이 책자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도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견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공청회 참가자 여러분과 공청회 개최를 적극 지원해주신 정부 당국, 그리고 진행 및 결과의 정리에 수고해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996년 5월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상우

빈

면

목 차

머 리 말

주제발표 내용	3
공청회 토론내용	35
토론참가자 명단	82

빈

먼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1. 일 시 : 1996. 2. 10(토) 10:00 ~ 12:30

2. 장 소 : 충청남도청 회의실

3.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후 원 : 농림수산부

5. 토론참석자

가. 사 회 :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나. 주제발표 : 강동제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장)

다. 토론자 : 김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성 (의성농지개량조합 이사)

 박병영 (하동농지개량조합 전무)

 박선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농지개량조합위원회의장)

 박영택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획실장)

 안재숙 (농지개발연구소 이사장)

 유갑현 (옥천농지개량조합장)

 이규현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이사)

 이항규 (강원도 조성기획계장)

 전종철 (금강농지개량조합장)

 지인수 (충청남도 조성계장)

(이상 가나다 순)

빈

면

주 제 발 표 내 용

빈

면

공청회 자료

농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1996. 2

〈목 차〉

- I. 농지개량조합법의 주요내용
- II.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계획
- III.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농 림 수 산 부

빈

면

I. 농지개량조합법의 주요내용

1. 추진 경과

- '93. 10. 29. : 정부안으로 법안 국회 제출
- '94. 10. :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 심의 보류
- 보류사유 : 법안의 내용중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 관련 규정
에 대한 이견
- '95. 2~8 : 농지개량조합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등 관
계인 의견 수렴 및 법안 수정 계획 추진
- '95. 11. 28. :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수정의결(여야 만장일치)
- '95. 11. 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95. 12. 29. : 법안공포('96. 6. 30부터 시행)

2. 제정 취지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남게 된 농지개량
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
- 농지개량조합의 재정자립과 자율적인 발전도모를 위하여 농지개
량조합자립육성금고를 설치
- WTO출범에 따른 국내 보조금의 감축에 대처 및 농지개량조합
의 운영 개선으로 수리시설관리의 원활한 도모

3. 법안의 주요골자

가) 조합의 설립기준을 신설(제9조)

- 조합이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수와 최소관할면적을 정하되, 그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설립되어 있는 조합은 수계·지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관할 면적이 설립기준 면적보다 적을 때에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제24조 및 제31조)

- 총회 의결사항 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집행적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경비절약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제정·변경등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함.

다) 조합장의 결격사유 확대(제33조)

-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 직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부과금을 체납한 불성실한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수 없도록 조합원 신분 2년이상 미보유자 및 조합부과금 체납자를 조합장의 결격사유로 추가 함.

라)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기준 및 조합운영경비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마련 (제44조 및 제45조)

- 농민부담조합비 인하에 따른 조합의 운영경비 부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조합운영경비보조금”이 쌀 이외의 다른 농작물에도 해당되는 품목 불특정 농업용수비용의 보조가 되도록 함으로써 WTO협정상 감축대상 보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자 조합비를 농지 10a당 현금 6,000원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따라 조합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이관하여 규정함.

마) 조합의 합병 · 분할 또는 해산명령규정 신설(제61조)

- 조합구역 일부를 조합원의 생활 편의에 따라 분할하여 다른 조합에 편입하거나, 조합구역이 도시계획 등으로 50% 이상 감소 될 경우 등의 사유로 조합의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이 필요한 경우에 조합총회에서 자율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으로 합병 · 분할 또는 해산하도록 하여 조합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

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비상임감사 추가 및 부회장제 신설(제77조)

- 농조연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고 회원 조합의 업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감사 1인을 둠.
- 농조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인 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사)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설치규정 신설(제83조 내지 제87조)

- 조합의 재정 자립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조성 재원과 운영 · 관리 등을 규정하되 조합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아) 농지개량계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 이양(제88조)

- 농림수산부장관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

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화에 부응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Ⅱ.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계획

제정방향

-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되,
 - 농민자율조직으로의 체제 정립 도모 및 운용상의 미비점 개선 보완
 - 조합의 경영합리화 및 능률화에 필요한 사항 반영
 - 조합 운영의 민주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권한의 위임 확대 및 조합자율범위 확대
 - 조합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문의 최대공약수준 의견 반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골자

1. 시행령 제정안

가) 조합의 설립기준 규정(안 제2조)

- 농조법의 위임에 따라 조합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설립기준면적으로 규정하되, 법 제정 공청회시의 다수

제출 의견인 5,000ha로 함. 다만, 현 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함.

나) 조합구역 편입 및 제외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조합이 설립된 후 다른 지역이 조합구역에 신규로 편입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내용과 이전 발생시의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인수자와 인계자간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함.
- 조합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농지법 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경우를 포함하여 전용 농지의 조합비 부과에 따른 농민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함.

다) 조합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 조합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수지”로 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대상을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확대하였음.(시행령 안 제11조)
-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규칙 안 제9조).

라) 농조자립육성금고의 설치에 따른 운영방법 규정

- 금고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조합의 재산은 매각사유발생후 금고 납부시점에 따라 금고 납부비율이 차등적용되므로 그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매각대상재산의 종류별로 매각사유발생일을 구체화하였음(안 제25조).
- 금고에 납부한 조합의 재산매각대금중 우선 보조액을 제외한 잔액은 납부조합이 지분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금고 지급 이자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 금고는 납입자금의 운영수익금

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것이므로 그 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분액에 대한 이자율을 년 1%로 해당액으로 하였음(안 제26조).

- 금고에 납입한 조합의 재산매각대금 중 금고 우선 보조율을 매각재산의 조성 혹은 취득 방법에 따라 차등화 규정하여 납입조합의 입장과 금고의 조성간에 형평 유지 및 합리성이 도모되도록 하였음(안 제27조)
 - 전액국고지원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 : 30%~40% 보조
 - 조합원의 일부 부담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 : 50%~60% 보조
 - 전액 조합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 : 70%~80% 보조

마)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위임 · 위탁규정 마련(안 제32조)

-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조합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시 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정관 · 인사 ·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훈령의 제정시에 조합의 공동이익 대변기관인 농조연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훈령에 조합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제정안

가) 농민 조직으로의 체제 정립(안 제2조, 제3조)

- 조합의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회개최, 설립인가신청절차 등을

마련하여 조합의 설립시에 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체계도 확립되도록 함

나) 조합설립기준 설정에 따른 예외인정기준 마련(안 제4조)

- 시행령으로 조합의 설립기준 면적을 정하되,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바, 농림수산부장관의 예외인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함
 - 이 규칙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완공으로 수혜지역이 설립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될 때
 - 인근 조합과의 통합으로 수혜지역이 8개시군 이상에 걸치게 될 때
 - 1개 도내의 조합수혜지역 면적 전체가 설립기준면적에 미달 할 때

다)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의 절차 규정 마련(안 제16조, 제17조)

- 조합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인 조합간 합병·분할이나 조합의 해산을 하였을 때와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조합간 합병·분할 및 해산을 하였을 때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 처리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조자립육성금고의 운용·관리 방법 규정(안 제20조, 제21조)

- 금고관리자는 특별회계로 조성자금을 관리하여 수입·지출이 일반회계와 구분되도록 하였고, 금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금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금고 운용에 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금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조연의 총회의

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고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22조)

-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지개량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은 폐지함.

III.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개량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 자격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만제곱미터이상일 것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서
2. 정관
3.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인수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조합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채무의 범위"라 함은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말한다.

제5조(조합구역의 편입) 조합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지역을 수혜지역으로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조합구역에서의 제외사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합설립 당초부터 기반시설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장차 수년내에도 그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을 가능이 없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을 가능이 없게 된 때
3. 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효능의 감소 등으로 수년간 계속하여 그 시설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장차 수년 내에도 그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을 가능이 없을 때
4. 도시계획구역·산업단지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장차 기반시설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을 가능이 없을 때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다

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한 토지로서 장차 수년내에도 기반시설의 이용이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을 가능이 없을 때

제7조(조합원 자격자의 인정) ① 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합원 자격자로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자격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조합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자격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유
2. 조합원 자격자로 인정받고자 하는자의 성명·주소
3. 조합원 자격자로 인정받고자 하는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표시
4.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표시
5. 당해 토지를 현재 사용·수익하고 있는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외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토지의 도면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조합원 자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조합원 자격자) 법 제19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조합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2.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조성한 개간지 등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제9조(조합원)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동일 토지에 조합원 자격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인에 한한다)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10조(조합 감사의 교육기관) 법 제3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11조(수익사업)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반시설 주변의 관광자원의 조성 및 개발사업과 임대업
 2. 토지·건물 또는 기반시설을 이용한 부대수입원 개발사업과 임대업
 3. 농어촌휴양단지사업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 목적의 달성을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합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연합회는 조합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의 수익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농어촌진흥공사·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수반하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말한다.

제13조(경비의 부과)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 예방이나 진급 복구에 필요한 때

2.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4조(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감면) ① 조합은 한해·수해·풍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상황이 현저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3조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부과금의 징수의뢰) ① 조합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 및 납입기한등을 기재한 조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그 취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조합이 의뢰한 부과금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의뢰한 경우에 징수한 금액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편성지침)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예산편성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매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 법 제54조 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근거로 수지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변경된 수지예산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54조제2항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변경된 수지예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제출 조합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은 수지예산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해산 사유인 사업정지기간) 법 제6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9조(연합회의 동기) ① 연합회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주소 · 성명
5. 설립인가의 년 · 월 · 일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본다.

제20조(분사무소의 등기) 연합회가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무소와 사업구역) ①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전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22조(사업) ① 법 제80조제1호에서 “회원이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회원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2. 회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지도
 3. 회원의 운영실태의 진단 및 운영개선의 지원
 4. 회원이 의뢰한 직원의 채용 등을 위한 시험관리
 5. 회원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사업의 기술지원
- ② 법 제80조제6호에서 “국가 또는 회원이 위탁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하는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환지
 2. 시험 및 연구개발사업
 3. 기타 국가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③ 연합회장이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사고시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연합회의 운영자금지원)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합회에 운영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매각사유의 발생일) 법 제8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각사유의 발생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기반정비사업의 준공일
2. 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폐지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지역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구역제외 승인일
 - 나. 폐지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의 준공일
 - 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반 시설을 폐지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용도폐지승인 일

라.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조합구역이 편입되어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주체와의 보상계약체결일

3. 법 제8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날

제26조(지분권에 대한 금고지급이자율) 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납입액 중에서 가지는 지분액에 대하여는 매년 금고에서 지분액의 년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금고의 보조율등) ① 법 제85조제3항에서 “매각재산의 종류별 보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고에 매각대금을 납입한 매각재산에 조합원의 장기채 부담이 없거나 전액 국고지원으로 조성된 경우 또는 매각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인 경우

가.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40

나.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35

다.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30

2. 금고에 매각대금을 납입한 매각재산에 조합원의 장기채 부담이 있을 경우

가.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60

나.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55

다. 매각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50

3. 금고에 매각대금을 납입한 매각재산이 전액 조합의 자체 재원으

로 조성된 경우

- 가.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80
- 나.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75
- 다. 매각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 때에는 100분의 70

②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매각대금은 그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을 고지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공고료등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조합이 재산매각대금 전액을 금고에 납입한 후 제2항의 국세 또는 지방세 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금고관리자는 금고에서 해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28조(조합의 일반감독) ① 조합은 제1차로 시·도지사가, 제2차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조합구역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제1차 감독자가 된다

② 조합구역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의 제1차 감독자가 아닌 시·도지사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협의를 제1차 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경영평가지침) 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조합의 경영평가는 조합에 대한 재정 운영 상황, 수익사업 추진성과, 대농민지원사업실적 등 조합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영평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3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법 제9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라 함은 조합의 업무 집행이 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기반정비사업계획과 환지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고시 및 공고의 방법)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고시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심사·통지·고시 및 열람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재결 및 통지와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의 기각 및 고시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및 고시
4.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5.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구역의 변경승인
7.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비부과 인가
8. 법 제4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탈퇴조합원의 분담액감면 승인
9.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비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및 그 결과 통지
10.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및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승인
11.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계속비 계상보고의 수리
12.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승인
13.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의 수리
1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의 인가
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흡수합병에 대한 고시

16.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신설합병 인가 및 고시
 1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분할설립 인가 및 그 고시
 1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 고시
 19.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조합의 청산인 임명 및 청산재산의 처분방법 승인
 20.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검사청구 수리 및 조합의 사업 또는 회계상황 검사
 21.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연합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예 작성
 2.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원칙 작성
 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임용에 관한 기준 작성
 4.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회계,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준 작성
 5.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영평가
- 제33조(결의·선거등의 취소청구) 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결의·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에 동 결의록 또는 결의록 사본 및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결의·선거등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 결의는 취소청구는 당해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
 2.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청구는 당해 선거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 ③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재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 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농림수산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에 대하여는 수탁관리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가목 내지 타목, 모목 및 소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또는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개량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준비회 개최)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준비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 선출

4. 별지 제1호 서식의 조합원 명부

5. 토지원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회는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 자격자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설립준비회의 구성원은 조합원 자격자의 수와 수혜지역면적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위촉한다.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인가된 지역으로서 그 사업시행상 조합 설치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준비회 의사록

2. 임원 명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인수할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내역서

4. 설립준비회의 의결을 얻은 기타 서류

제4조(조합설립에 대한 예외인정기준)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수계·지리여건상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기반정비사업의 완공으로 수혜지역이 영 제2조의 설립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2. 인근 조합과의 통합으로 수혜지역이 8개이상의 시·군(조합의 수혜지역 500만제곱미터이상이 속하고 있는 시·군을 말한다)에 걸치게 될 경우

3. 1개 도내의 수혜지역면적 전체가 영 제2조의 설립기준면적이내인 경우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조합구역의 편입) 조합이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조합구역에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구역 편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사유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서

3. 기반시설인계서 부본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천200분의 1 지도)
5. 구역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안
6. 편입동의서
7. 경비부담능력산출내역서등 필요한 서류

제6조(조합구역제외 승인신청) 조합이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 제외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합구역제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제외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구역제외사유증명서는 농지전용허가증 또는 농지전용신고증의 사본이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구역제외사유서
 2. 구역제외사유증명서
 3. 조합원명부 및 토지원부
 4. 별지 제7호 서식의 조합원구역제외신청서 사본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구역제외사유증명원서
 5. 구역제외에 관한 정관변경안
 6. 구역제외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7. 별지 제9호 서식의 탈퇴조합원의 부담감면액 또는 채무액산정조서
- 제7조(조합원 자격의 심사기준등) ①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2.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던 조합구역안의 토지가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에 영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구역에서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② 법 제19조의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경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추정한다.
-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주소지로 한다.

제9조(수익사업)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을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영농 여건의 개선 및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단지조성과 시설보수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농업기계화촉진 및 영농편익을 위한 수리시설기기와 구조물, 기계부품의 제작·보수·대여 및 보급알선에 관한 사업
3. 조합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하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합에 한한다)
4. 기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영농대행을 위한 사업

② 조합은 수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부과) 조합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부과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금액·납입기한·납입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납입고지서의 발급) ① 조합은 법 제43조 및 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과목·납입금액·납입기한·이의신청절차 및 납입장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징수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감면신청)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감면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부과금징수유예(감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운영경비의 국고보조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운영경비의 국고보조(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운영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운영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운영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도별 조합운영경비보조금의 금액을 교부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조합운영경비보조금 승인내용에 따라 조합별 운영경비보조금의 교부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운영경비보조금의 관리) 조합운영경비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5조(탈퇴조합원의 분담액 감면) ① 조합이 법 제47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감면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에 의한 합병·분할 및 해산의 절차)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합구역 일부를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조합간에 분할 및 편입의 조건 및 시기 등을 미리 예약한 후 관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 및 편입의 예약 확정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해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그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산인가신청서
 - 나. 정관
 - 다. 조합원명부 및 토지원부
 - 라. 총회회의록 사본
 - 마.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산재산목록
 - 바. 기타 필요한 서류
3. 조합이 다른 조합에 합병하고자 해산할 경우에는 합병하는 조합과 합병조건 및 시기 등을 미리 예약한 후 관계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예약을 확정하고 제2호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서류와 인계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해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산되는 조합의 조합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합병·분할 및 해산의 절차)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구역의 일부를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분할 및 편입명령이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에 관계되는 조합간에 분할 및 편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정관의 변경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의 설립 기준에 미달되는 조합을 다른 조합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합병 및 해산명령이 있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에 관계되는 조합간에 합병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합병하는 조합의 정관변경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하는 조합의 조합장은 합병조합의 정관변경 인가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합병·분할인가 신청)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의 조합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총회회의록 사본
3. 별지 제15호 서식의 권리의무승계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9조(금고보조금의 용도) ① 법 제8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합회가 회원을 지도 및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
 2.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서 조합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2.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제20조(금고의 운용·관리)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관리하는 자(이하 “금고관리자”라 한다)는 금고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고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관리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금고관리자는 매회계년도 현재의 금고운용실적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관리자는 금고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매입등 금고 종식에 유리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범위와 유가증권의 종류는 금고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금고관리자는 금고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금고관리규정) 금고관리자는 금고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금고관리규정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농지개량계의 조직기준

- 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기준

- 가.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

3. 농지개량계의 해산기준

가. 수혜지역이 조합구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제23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및 농지개량계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청회 토론 내용

빈

면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진행자 : 지금부터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정일 부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최근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과 때를 같이하여 쌀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쌀 증산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겨울 가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오신 우리 농지개량 조합 관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작년말에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을 만들고, 각종 제도개혁을 하기 위해서 약 20여개의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개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93년도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농지개량조합법안을 제출했던 것이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지개량조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농지개량조합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4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공청회는 모두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공청회에 여러 번 참여해 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으로 압니다. 농지개량조합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게 하였고,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실제로 법을 시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각 농조에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충청남도 당국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자 : 이제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정일 부원장님의 사회로 공청회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강정일) : 공청회 시작에 앞서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이규현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경상북도 의성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김종성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전라북도 금강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전종철 조합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충청북도 옥천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유갑현 조합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경상남도 하동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박병영 전무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제 옆에 앉으신 분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농지개량조합위원회의 박선우 의장님 이십니다. 저의 왼편에 앉으신 분은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의 강동제 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오신 박영택 기획실장이십니다. 그 다음은 농지개발연구소의 안재숙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연구부장으로 있는 김정부 박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에서 오신 농지조성기획과의 이항규 계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서 오신 지인수 조성제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동제 과장님께서 오늘의 공청회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내용은 아마 10분 전후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발표자(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장 강동제) :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장 강동제입니다. 그 동안 농지개량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님들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과 노동조합대표,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이 농지개량조합법이 통과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존속하다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던 농지개발 및 농어촌진흥공사 관련 규정이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진흥공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실제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누더기 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저희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지개량조합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정되지 못하고, 1995년 11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동년 12월 29일에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개량조합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남게 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

합회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에 따라 국내 보조금의 감축에 대비한 농지개량조합의 운영 개선으로 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자립육성금고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개량조합법의 주요 골자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개량조합의 설립 기준을 신설해서 조합의 설립 기준 마련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와 최소 관할면적을 정하되, 그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합은 두개 조합의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할 면적이 설립기준면적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이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적정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수와 최소관할면적을 정하되, 그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설립되어 있는 조합은 수계와 지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설립기준 면적보다 적을 때에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 빈번하게 발생되는 집행적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경비절약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부동산의 취득·판리 또는 처분,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제정·변경 등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조합장의 결격사유를 확대해서 조합원의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자이거나 조합부과금을 체납한 자를 조합장의 결격사유로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즉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 직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부과금을 체납한 불성실한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수 없도록 조합원 신분 2년이상 미보유자 및 조합부과금 체납자를 조합장의 결격사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넷째,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기준 및 조합운영경비에 대해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민이 부담하는 조합비를 인하함에 따른 조합의 운영경비 부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조합운영경비보조금”이 쌀 이외의 다른 농작물에도 해당되는 불특정품목 농업용수비용의 보조가 되도록 함으로써 WTO협정상 감축대상 보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합비를 농지 10a당 현금 6.000원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또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따라 조합운영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합을 합병하거나 분할 또는 해산하는 명령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조합구역 일부를 조합원의 생활 편의에 따라 분할하여 다른 조합에 편입하거나, 조합구역이 도시계획 등으로 50% 이상 감소될 경우 등의 사유로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이 필요한 경우에 조합총회에서 자율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으로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도록 하여 조합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지개량조합에 비상임 이사를 추가하고 부의장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업무에 대해 능률성을 높이고 회원 조합의 업무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인 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조합의 재정 자립과 전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조성재원과 운영·관리 등을 규정하되 조합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목적인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그동안 각 관계부처와 시·도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한 것인 바 이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의 제정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농민자율조직으로의 체제 정립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경영 합리화와 능률화에 필요한 사항과 조합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문의 최대공약수준 의견을 반영하고, 나아가 조합 운영의 민주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권한의 위임 확대 및 조합자율범위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의 주요 골자는 ① 조합의 설립기준 규정, ② 조합구역 편입 및 제외 사유와 절차, ③ 조합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④ 농조자립육성금고의 설치에 따른 운영방법 규정, ⑤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위임·위탁규정 등입니다.

셋째, 농지개량조합의 설립기준은 농조법의 위임에 따라 조합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설립기준면적으로 규정하되, 법 제정 공청회시에 다수의견으로 제출된 5,000ha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즉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설정규정면적으로 규정하되 법 제정 공청회시 다수 제청 의견인 5,000ha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법을 만들 때에 시안으로는 10,000정보, 8,000정보안까지 나왔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5,000ha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ha로 저희들 시안을 만들었고 현재의 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 규정의 시안 규칙에 명

시토록 했습니다.

넷째, 농지개량조합구역에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사유와 절차로써 조합이 설립된 후 다른 지역이 조합구역에 신규로 편입할 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내용과 이전 발생시의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인수자와 인계자간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하고, 조합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농지법 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경우를 포함하여 전용 농지의 조합비 부과에 따른 농민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합의 수익사업범위는 조합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수지”로 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대상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확대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조자립육성금고의 설치에 따른 운영방법으로서 금고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조합의 재산은 매각사유발생후 금고 납부시점에 따라 금고 납부비율이 차등적용되므로 그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매각대상재산의 종류별로 매각사유발생일을 구체화하였고, 금고에 납부한 조합의 재산매각대금중 우선 보조액을 제외한 잔액은 납부조합이 지분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금고 지급 이자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 금고는 납입자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조성되는 것이므로 그 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분액에 대한 이자율을 년 1%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에 납입한 조합의 재산매각대금중 금고 우선 보조율을 매각재산의 조성 혹은 취득 방법에 따라 차등화 규정하여 납입조합의 입장과 금고의 조성간에 형평 유지 및 합리성이 도모되도록 하였는데 ① 전액국고지원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는 30~40%를 보조하고, ② 조합원의 일부 부담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는 50~60%를 보조하며, ③ 전액 조합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는 70~80%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서의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위임·위탁규정으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정관·인사·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혼령의 제정시에 조합의 공동이익 대변기관인 농조연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혼령에 조합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개량조합을 농민 조직으로의 체제를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조합의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회개최, 설립인가신청절차 등을 마련하여 조합의 설립시에 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법체계도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합설립기준의 설정에 따른 예외인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조합의 설립기준 면적을 정하되,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바, 농림수산부장관의 예외인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외는 ① 이 규칙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완공으로 수혜지역이 설립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될 때, ② 인근 조합과의 통합으로 수혜지역이 8개시군 이상에 걸치게 될 때, ③ 1개 도내의 조합수혜지역 면적 전체가 설립기준면적에 미달할 때 등입니다.

셋째,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의 절차는 조합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인 조합간 합병·분할이나 조합의 해산을 하였을 때와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조합간 합병·분할 및 해산을 하였을 때,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 처리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넷째, 농조자립육성금고의 운용·관리 방법은 금고관리자는 특별회계로 조성자금을 관리하여 수입·지출이 일반회계와 구분되도록 하였고, 금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금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금고 운용에 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고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에 있어서는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지개량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은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지개량조합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저희들이 채택할 것은 채택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지개량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강동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될 때 그 제정의 기본방향이 농조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나아가 농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이러한 법의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조금전 강동제 농림수산부 개발기획과장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토론하려 오신 분들께서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공청회의 토론 요령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목적은 이미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모임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 안을 그것과 관련되는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청회에는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조관련 공청회를 할 때 보면 토론하시는 분들이 농조와 관계되는 온갖 문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농업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이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공청회에서는 이미 통과된 농조법을 실천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의견에 대한 것만을 여기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하실 때는 주제가 제시하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회의가 끝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토론자에 할당된 토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이 8-9분이 되면 제가 신호를 하겠습니다. 하오니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들의 토론이 모두 끝나면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서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몇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께서 앉아 있는 좌석을 보면 주로 농조에서 오신 분들이 저의 오른편으로 앉았기 때문에 앉으신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라남도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이규

현이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현(영산강농지개량조합 이사) :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담양에 살고 있는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이사 이규현입니다. 지난번에 농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농조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령을 만드는 데 불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강정일부원장님께서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가급적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농림수산부 장관께서도 최근에 쌀 자급기반에 위협이 좀 있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각별한 당부와 지침을 내리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쌀과 같은 식량의 자급을 위한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지개량조합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농지개량조합법이 지난해에 통과되어 공포된 것을 보면서 다음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쌀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이고 생명줄로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쌀의 증산을 위한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비를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시된 시행령 안에 의하면 이미 제정안으로 되어 버렸습니다만 농민들인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10a당 6,000원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논에다 쌀농사 대신 시설원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런 말씀 이전에 저는 쌀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농민의 비용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해 주고 쌀값을 보장해 준다면 쌀 농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쌀 농사를 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

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보면 농조자립육성금 고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자립금고에 조합이 넣은 액수에 1% 이자를 그 해당 조합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각 조합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우리 영산강조합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 적립금 등을 좀 적립해 놓고, 이를 시중은행이 렌탈 그런 곳에 예치할 경우 대단히 높은 금리를 받고 있으며, 또 그 이자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금고에서 일정하게 지급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평이하고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쓰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의 이자를 1%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조육성자립금고에 예치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는 최소한 5%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 제32조에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제2항에 '농림수산부장관은 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농조연합회장에게 위탁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탁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방향이 농민자율조직으로서 그 어떤 체제를 정립해 내고, 또 그리고 조합운영의 자율범위들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런 시행령의 제정방향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별개의 법인이고, 양자는 상하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데,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다 위

임을 하면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각 농조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삭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조직 및 임원·직원의 근무와 보수는 어차피 농림수산부에서 농민이 부담하는 농지개량조합비를 5%로 낮추면서, 부족분을 국고보조로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이와같이 부분은 농림수산부의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농림수산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놓지 이것이 위탁되어질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종전과 상당히 틀린 점은 농조와 조합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소지가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에 가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제외 사유라는 것은 현실이 뚜렷하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들면 농지전용을 할 경우, 즉 조합원이 그 해당 농지를 전용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서가 나왔을 것이므로, 그 허가서의 사본을 그냥 조합에만 제출하면 조합에서 바로 구역제외 처리하여 전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행정이 좀 간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시장·군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을 편하고 간소하게 해주어 조합원들이 업무를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완화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당초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좀 바꾸어서 수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익사업 같은 분야에 있어서 당초에는 '토지와 저수지를 이용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안에는 '토지·

건물,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체'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됨으로써 그 조합의 수익사업이 좀 확대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더 많은 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하나마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상북도 의성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김종성이사님 부탁하겠습니다.

김종성(의성농지개량조합 이사) :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의성농조에서 온 김종성입니다. 저는 의성농조의 임직원자격이 아니라 면단위의 농민대표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시안에 대한 좋은 말씀을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면단위에서 현재 이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오지 면에 대한 저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 의성농지개량조합은 제가 알기로 의성에서 제일 큰 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고 보조금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현임직원들이 아주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현재의 국고보조금을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전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성농지개량조합은 기존 양수장만 해도 약 100여개가 됩니다. 의성농조가 가지고 있는 100여개가 되는 양수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이 전부 노후화되어 지금의 국고 보조금으로는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실시하는 도수로 정비나 각종 공작물 시설 및 보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농지개량조합의 전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임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고 보조금을 100%이상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과 전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세번째는 전라북도에서 오신 금강농지개량조합

의 전종철 조합장님이십니다. 부탁합니다.

전종철(금강농지개량조합장) :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금강농지개량조합장 전종철입니다. 오늘 농지개량조합의 발전과 운영의 합리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농림수산부 관계관님과 토론에 초청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부원장님을 비롯하여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농업관련 주무과의 기관장 및 관계자님, 그리고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조합원 및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토론자의 토론 내용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83조에서 제87조까지에 의거해서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조합의 재정자립과 전전조합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의 재원조성분야라던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법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이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금고기금은 현재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간 약 1,000억원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기타 이자율 등의 제반여건이 불변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의 완전한 재정자립을 위하여 최소한 현재 화폐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농지개량조합의 불용재산 매각대금만으로 이 기금을 적립한다고 함은 그 적립해야 하는 의무비율이 평균 50% 내외이며,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불용재산이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용도폐기하기 전에는 불용자산매각대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

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106개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에 의해서 연간 약 1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00년이 되어야 1조원이 조성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농지개량조합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농조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자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최소한 매년 농조에서 출연하는 기금 이상의 출연금을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어떤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WTO협정에 따라 2004년 이후에는 농업에 대한 전액 보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기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방법 또는 대책이 있는지 정부측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농조법 제98조에 명시된 권한 이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법시행령안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의하면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작성이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원칙 작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임용에 관한 기준 작성,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회계,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준 작성,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경영평가 등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농촌근대화촉진법 상에는 위탁 근거가 없어도 필요시 제규정준칙안 작성이나 통계의 취합 등 내부적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데도 구태여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려 함은 실질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바 정부의 심층적인 의도와 방침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법 제5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부과금의 징수 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 제4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 제의나 조기 징수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세 체납·체불에 대하여 체납·체불 예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이 직접 체납·체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과 시행령안대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징수를 기피할 경우 대비할 어떤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지개량조합의 체납금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열성적으로 강제 징수에 임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체납에 대한 징수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와 같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이 직접 체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좋은 방안의 토론입니다만 이미 본인이 농림수산부 담당관과 유관기관 등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두가지만 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청회는 농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농지개량조합의 실질적인 자치행정 구현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말씀 건의드립니다.

첫째로 농조 운영관리상 예산결산 승인사항에 대한 전의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예산·결산서를 보고로 가름하고,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시 해당 조합의 책임을 묻는 책임행정 구현과 자치·자율운영의 조합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실질적인 자치조합으로 육성발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농림수산부에서 하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대의원 및 임원의 의결 수당으로 1일 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축수협의 경우 1일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농업단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수차 전의되었습니다. 금번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보수규정안을 상정하라고 하면 대의원들에게 설명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

을 감안하시고 조합의 자치기구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점을 행정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오는걸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충청북도 옥천농지개량조합에서 오신 유갑현조합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유갑현(옥천농지개량조합장) : 먼저 전북 금강농조조합장님께서 농림수산부와 관계관님께 인사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사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부터 이를 동안 농어촌발전위원회 특별세미나가 농촌진흥원에서 열려서 거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의 농어촌발전위원회 특별 세미나에서 1996년도 농림수산부의 시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 자급에 관한 시책이 제일의 과제라는 농림수산부 당국자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쌀 자급자족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것은 쌀 생산시책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 그 쌀 생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정초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쌀중점시책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문제가 여기에서 거론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우 참담하고 가슴 아프면서 아이러니컬하게 느낍니다.

지금 전국에 저희 군소조합과 같이 시설기준이 5,000정보 미만인 조합은 전국에 77개에 달합니다. 이들 군소조합의 조합장들은 이 시설기준 5,000정보에 대해서 먼저 농림수산부 관계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어떻게 해서 5,000

정보를 적정기준으로 하는 산출 근거로 보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작년 11월 22일에 전국조합장 정기총회 때 서명결의하여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농조 통폐합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농조는 100여년 가까운 역사를 거치면서 수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합의 수가 많을 때는 600여조합에서 300개로 줄고, 그 다음에 200개로 다시 줄고, 현재 최극소화한 것이 106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 더 줄이는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또 수용할 수 없으니까 현체제를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정서라던지 행정구역문제 또는 수계문제, 이와 같은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예외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는 것으로 전조합장이 서명결의를 해서 농림수산부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오늘날 농조가 당면한 과제는 통폐합이라는 것을 아니하면 안 할수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떤 과행적인 운영이 여러 각도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이라던지 사실상 조합의 존립 의의가 거의 상실되고 있지요. 조합에서는 일정한 목표액을 조합원이 공동출자해서 공동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설립의의가 있는데 사실상 국고의 존 수지에 의하여 저울질되는 오늘날 조합으로 봄서는 조합의 성질이 아주 변질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현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과연 이 통폐합의 기본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모두 연구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 가장 큰 목표는 예산문제가 아니겠느냐하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WTO와 연관시켜 보면 앞으로 보조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농민들을 보조할 수 있는 재원의 문제 즉 재정경제원과 항상 마찰이 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구상한 최종안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문제를 자연히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합장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통폐합의 명분이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조합원을 위한 통폐합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예산절감은 사실상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총회에서 서명결의하여 보고한 것에 비하여 이번 시행령안을 보고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유지를 저희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군소조합은 일률적으로 통폐합을 반대하였는 것으로 전의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설기준을 5,000정보로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의 주제인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보다 증폭된 대민 서비스 즉 농민 조합원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 조합의 발전 향상이라 보겠는데, 과연 이 통폐합으로 인한 조합원에의 봉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볼 때 여러 가지 지역정서상 또 통폐합후의 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리감, 이러한 거리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합원들은 현재 각종 농지세라던가 또 유지관리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유지관리에 조합원이 참여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농촌은 잘 아시겠지만 공동화 현상,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과거 조합 자체적으로 국고보조 없이 했을 때는 1일 부역까지도 가능했습니다. 1일 내지 2일 정도의 공동작업을 해서 소류지의 준설과 같은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제 이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준설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 거의 노인과 부녀자들이 와서 그 무거운 흙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폐합 후에 오는 문제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순히 여러 각도에서 통폐합 문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혁 차원에서 이 농조운영문제를 검토하여야 됩니다.

또한 예산절감문제는 물론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서도 기본적인 예산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자연히 재채를 받기 때문에 시설기

준도 5,000정보로 결정하지 않았나 보아지는데, 저희들이 한가지 의심되는 것은 5,000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하고 난 뒤에 오는 문제, 즉 과연 그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희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소조합 20-30개를 통폐합하면 과연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될 것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운영금고의 조성관계입니다. 1조원을 조성하는 데는 10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1,0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드라도 앞으로의 현재 금리가 3.5%, 국제금리가 5.5%정도 되는데, 이러한 금리체계하에서 과연 1,000억정도의 금고를 조성해서 법정 과실에 의한 이자를 가지고 얼마나 농조를 육성·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1조원의 기금조성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연간 100억씩 조성해서 100년이 소요되는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현재 운영금고 자체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치냐 또는 통폐합 후에 통폐합된 조합이 재무구조가 열악한 조합들입니다. 그러한 조합들을 통폐합하므로써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조합장이 1명씩 있는 3개조합이 통폐합되면 2개 조합장은 줄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현재 77개 조합을 통폐합했을 경우 최소한도 25-30개 조합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든 통폐합관계는 저희 군소조합에서는 재무구조는 열악하지만 새롭게 기구축소라던가 사명감에 의하여 저희들의 과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과 대책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쌀·자금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유휴지의 증가일로라든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라는 면에서 생산성과 부가가치성이 낮음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상당히 감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급자족한다는 관점에서 목표량과 계획량을 꼭 생산하기 위해서 휴경지화 또는 고령화되어 이·탈농하는 농민의 농지를 위탁영농 등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항상 수탁하여 쌀 생산에 관한 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단순히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전담하는 것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할 때 WTO와 관계없이 국고 지원 을 하는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현재의 농조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군소조합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이와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년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도 현체제를 유지하고 동시에 쌀 생산의 핵심기관으로서 농조에 대한 하나의 소임을 자청해서 농조를 쌀 생산의 핵심 기관으로서 육성한다면 국고지원문제와 같은 것도 여러 각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농조의 통폐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표해서 두분이 오셨는데 그 중 한분인 경남 하동농지개량조합의 전무로 계시는 박병영씨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영(하동농지개량조합 전무) : 하동농지개량조합에서 온 박병영입니다. 우리는 농지개량조합 직원으로서 실지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실제로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촌근대화의 촉진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사실상 이번에 사업분야와 조직분야의 2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사업분야는 농어촌정비법으로 흡수되고, 조직분야는 이번의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를 가지고 농지개량조합이 실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지개량조합은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날까지 우리 농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앞으로는 더욱 더

국제농업환경변화에 따른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WTO출범으로 우리 농업이 경쟁농업, 선진농업을 향한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주요 핵심체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예전보다 더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고, 또한 농어촌정비법을 보더라도 농업생산기반 등의 사업이나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상당히 약해서 조합원으로부터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타기관으로부터 팔시를 받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토론 과제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타법과의 협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농지의 전용문제는 사업인가가 나오면 바로 협의·동의·승인으로 가름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은 이제 인가청에서 협의가 있어야 가름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인가를 신청해 보면 인가청에서 협의를 해서 내려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조건을 달아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대부분 지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의 보상에 따른 사업의 인정 문제, 또 시설의 관리상 몽리민 혹은 조합원들의 어떤 무상 훼손이나 손괴를 했을 때 어떤 강력한 법적규정이 없는 문제, 또 우리가 목적외 사용에 있어서 사소한 시설부지 하나를 목적외에 사용해도 일일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어촌정비법의 개선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조합 직원과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2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가 합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법 제47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탈퇴조합원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지개량조합법의 마련을 위해서

많은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우리는 법의 주요 핵심문제와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만 가지고 공청회를 하였지 정확한 법조항을 마련해 가지고 어떠한 문구에 대한 공청회를 한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농지개량조합법에서 탈퇴조합원의 책임을 보면 구역제외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는 구역제외전의 조합채무분담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걸 시행령이나 이런데 좀 반영할 수 없을까 싶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 농조 시설의 설치시기에 따라서 몇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점은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농조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에 국고 70%, 그 다음 응자 30%로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공해서 지금까지 농민이 부담할 장기채를 국가에서 대신 조금씩 갚아 오고 있는 중에 개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70%, 농민부담 30%로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수원공 정도 공사를 완료하고 평야부의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100% 국고로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구역이 조합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똑같이 조합구역 제외로 인해서 구역제외전의 채무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을 때 결과적으로 100% 국고보조로 세 사업을 시행한 지구는 장기채가 한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구역 제외를 해도 채무분담금을 한푼도 안내어도 되고 국고를 70%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장기채로 하여 일부 사업을 시행하다 지금 탈퇴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원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장기채가 있었는데 평야부 공사가 되기 전에 결과적으로 조합구역이 되는 지구의 몽리민은 그 지구로 봐서는 장기채가 있으면서도 평야부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 논 옆의 물길에 대한 혜택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수원공 공사에 따른 채무분담을 같이해야 하

는 이런 세가지의 불합리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이 똑 같은 조합구역안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조합구역제외가 되는데 어느 지구는 채무에 대한 분담금을 내어야 되고 어느 지구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하나도 안내어도 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법시행령에 특정한 어떤 사항을 명시해서 가능하면 이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불가능할 경우는 농업용 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공공사업이나 농업용시설이 아닌 어떤 전용의 경우만 그것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금 인정했으면 싶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아까 전에 금강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부과금의 징수의뢰법 제5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면 경비 기타부과금의 체납자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수료는 1000분의 4이며, 의뢰시는 지방세 체납 채무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 주체가 체납 채무를 하지 못하고, 조합비와 전혀 관계도 없는 시장·군수한테 의뢰를 해서 체납 채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과 그 다음에 민선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수수료 1,000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가 4만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수수료 4만원을 받으려고 민선단체장이 인심 잃어가면서 과연 체납 채무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사항이 앞의 토론자가 지적한 시장·군수가 체납 채무를 의뢰할 때에 무성의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다가 부과를 한 주체가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꼭 불가능해서 시장·군수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군수가 몇일내에 뭐 30일이면 30일 이내에 체납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서 직접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라도 반드시 신설이 되어

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징수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는 조합의 채무를 종결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토론하신 다른 이사님들과 조합장님께서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 생각으로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박전무님 감사합니다.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오신 박선우 의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박선우의장님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농지개량조합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많을 줄 압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지난번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오래 하시던데 시간을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박선우(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농지개량조합위원회 의장) :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부 관계관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촌과 농민의 실의를 달래고 활력이 넘치는 농지개량조합의 근무 여건이 조성되어 미래지향적 농촌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우리 전노조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는 농업정책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시안 내용중에서 제2조를 보면 조합의 설립기준으로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만m²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조에서는 그 동안 1도 1조합을 주장해 왔었는데, 최소한 이번의 시행령 내용에는 10,000ha 이상 정도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만약에 설

립규모를 10,000ha이상으로 했을 때 정부대행사업을 농조에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경지정리사업비 762억원, 배수개선사업비 122억원, 개보수사업비 56억원, 환지비 154억원 등 연간 총 1,094억원의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입을 전액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한다면 약 730km의 수로를 콘크리트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접투자효과가 있어 농조가 물 관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사업을 책임 시행할 것이므로 하자 발생의 미연 방지와 민원 효과라는 사회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간 270억원에 불과한 농민조합비까지도 자체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농민 조합원에 대한 2.45%의 소득보전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이 시대의 가난하고 소외받은 계층으로 전락해 버리는 농민 조합원들의 가슴에 적게나마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987년도까지 농민의 조합비로 운영되었던 농지개량조합은 농어촌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까지 제정하며, 1988년과 1989년 양년도에 거듭해서 농민 조합비를 인하 조치하고, 운영비 부족분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해 놓고 정상적인 국고보조가 그 동안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조합별로 적립금마저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서 시멘트 한 포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재투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조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조의 광역화로 수입되는 효과는 이렇게 어려워진 농지개량조합 재정에 도움이 되어 농조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시안 내용 5,000만m³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10,000ha 이상으로 이것을 개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행령 시안 내용 제11조 수익사업부분을 보면 농조연합회가 농조의 수익사업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로 고쳐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제22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2조 사업부분에서 '회원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회원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복지 후생지도'라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도'라는 문구를 '지원'이라는 문구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제3항을 보면 '농조연합회장이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24조 농조연합회의 운영자금지원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농조의 권한 이것을 농조연합회장에게 위탁한다 해 놓고,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조연합회장에게 위탁한다'고 해 놓고, 일반 정관의 작성, 또한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기록의 원칙 작성,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보수·임명에 관한 기준작성, 그리고 조합의 회계 및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준작성, 조합의 경영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그 본연의 임무가 강조되는 공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익단체이며 용역단체인 농조연합회에서 농조의 인사권·지도권 운운하는 내용이 이 시행령의 시안에 담겨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며, 이는 시군 공무원들의 인사권·지도권을 일반기업체에 위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농지개량조합을 두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처럼 난립이 된다면 앞으로 일선 출장소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려운 조합 재정을 세우고자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와 실적이 다분하며 천등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홍수와 산하의 초목이 매마르는 불볕 더위, 그리고 가뭄 현장 등을 누

며 가며 다져진 체험으로 물 관리에 관한 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해야 할 입장임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처지가 뒤바뀐 것은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얹힌 힘과 로비의 대단함을 느끼게 하고도 남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사장이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회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웃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대로 가면 2-3년안에 무너질 조합이 전국적으로 속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파경으로 달리고 있는 농조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농조연합회의 운영자금까지 지불한다는 특혜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직원 승진이나 보수면에서 농조직원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농조연합회와는 동질화 될 수 없는 처지이며, 우리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농지개량조합위원회에서는 시행령안 제32조에 포함된 직원의 복지 및 인사 등 제반 사항과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와 단체협약의 절차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과연 농조의 지도권한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훌륭하시고 로비력이 뛰어나신 농조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 직원은 대책 없이 축소하여 온 것도 부족해서 또 다시 감축하려 한다면 대농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만이 초래될 것입니다. 책상행정위주로 농조연은 오히려 직원 수를 늘려 가는 기현상 속에 본부는 1실 4부 1소를, 또 지방에 8지회 1출장소를 두고, 550여직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일인당 약 6,200만원 풀인 연간 330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풍돈 정도를 농조에 선심 쓰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바라 볼 때 이제라도 어떠한 일에서인지 정부의 특혜 속에 고속성장을 해 온 농조연에 농지개량조합운영금고의 장악과 인사권·예산권마저 안겨 줌으로서 사실상 중앙회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또 확보시키려는 대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차후에 이 일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농조자립육성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축 자립육성금고조항을 보면 정부출연금의 의무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84조제1항제9에 보면 정부출연금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한 농조육성금고 재정 재원의 50%이상 지분이 확보되도록 매년 출연해야 된다는 내용이 의무규정으로 시행령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보면 지금 시행령안 제27조 내용을 보면 제1항제1호 '농조육성금고의 매각대금을 납입한 매각재산에 조합원의 장기채 부담이 없거나 전액 국고지원으로 조성된 경우 또는 매각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보면 매각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할 때는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실 것을 전의 드립니다. 다음 나항에 2년이내에 100분의 30, 2년이내에 금고에 납입한 때는 100분의 3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50으로 되어야 하며, 다항에 2년이 경과한 후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00분의 45로 되어야 하며, 다음 제2항에서 금고에 매각대금을 납입한 매각재산에 조합원의 장기채 부담이 있을 경우 가호를 보면 매각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할 때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실 것을 전의 드립니다. 이 부분의 수정에 대한 이유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나호를 보면 2년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현재 100분의 55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70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다호에 2년이 경과한 후에는 100분의 5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65로 되어야 합니다. 다음 3항을 보면 금고의 재산매각대금을 납입한 매각재산이 전액 조합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경우 가·나·다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의 자립은 낙후되어 있는 수리

시설의 현대화를 현재의 15%수준에서 미국, 호주 등 선진 농업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에 논의될 사항이며, 국가 자산인 농지개량조합 이전 확정 후에 또 다시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함은 개인간의 거래관행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국고보조는 농업발전과 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민에게 투자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민 조합원의 자산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재산매각대금의 자립육성금고 납입 의무화는 재산권 침해이며, 다분히 위헌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어 1994년도에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1995년도에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농조위원회에서는 노후화된 농촌수리시설물이 현대화되기 이전에는 농조자립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목표액의 50%이상을 정부가 출연하지 않는 자립육성금고 설치기준은 결사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나 시행령 시안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문화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정부출연금 의무조항이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설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농조육성자립금고보조율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조성의 대부분을 농조의 재산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으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빚어짐을 아는 농민 조합원 총회에서 재산매각의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화시대에 조합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경우까지 재산매각대금을 금고에 납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매각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라는 촉박한 기일내에 재산을 매각한다면 요즈음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매매거래가 한산해서 덤핑가격으로 재산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농조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지향하고 모든 조합과 조합원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견이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는 위험심판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오늘 이 공청회는 작년에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을 위해 개최하였던 4번의 공청회와 합치면 다섯번째입니다. 그 동안 공청회의 열기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오늘은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역시 또 열기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약간 바꾸어 농지개발연구소의 안재숙 이사장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숙(농지개발연구소 이사장) : 지금 소개받은 안재숙이 올시다. 그 동안 약 40년간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기반조성, 그리고 농지개량 조합의 변천사상을 지켜보고, 그리고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수 없을 가 하는 면에서 약 10년 동안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해 온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공청회에 몇 차례 나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당히 농조가 민주화되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스스로 자생의 길을 걷는다는 면에서 마음 흐뭇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주제로 한 주된 내용을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2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설립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농조자립육성금고를 운영하는 문제로 집약됩니다.

먼저 농조의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저희 농지개발연구소에서 그 동안 약 2년정도 농조발전 상에 대한 연구를 해 왔고, 보고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3년전에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조의 설립기준은 10,000ha 혹은 20,000ha, 현행대로 좋음 등 많은 의견이 작년의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연구하여 제시한 바로는 약 5,000ha가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약 2,000ha규모의 농조 출장소가 만일 독립된 조합으로 운영된다면 얼마만큼 운영비의 차이가

생길 것인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현재 실제로 있는 출장소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사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약 40% 가까운 경비가 더 들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나와 있는 5,000ha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잘되었다고 저 나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 농조자립육성금고는 농지개량조합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만 무엇인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닌가하는 점과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끊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전국에 있는 우리 나라 농조는 그날로써 전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구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시스템을 그 쪽에서는 토지개량부라고 그렇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저희 연구소에 종종 찾아와서 문의를 하는 것이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해서 생산기반조성분야에 100% 보조를 지급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배경과 입법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전국민들이 받아 들이는 배경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종종 문의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100%보조를 한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조의 운영자금에 대해서 즉 경상비에 대해서도 지금 80% 정도를 해마다 정부가 국고보조로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럽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그러한 길을 열었으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기부터 금년에 걸쳐서는 일본에서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장성이나 또는 국회 로비를 상당히 하면서 무언가 정부 지원을 조금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토지개량부 즉 우리 나라 농조와 같은 경우에

는 중앙 정부에서 운영자금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화가 일찍 정착된 일본의 경우에 시정촌 즉 우리 나라의 시·군에서 하나의 농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공공재산의 일환으로 그 지역 사회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보고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평균 30%정도의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행정적인 간접이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본의 특징입니다. 거의 자율적으로 조합마다 정관이 다르고 해마다 총회를 통해서 정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번에 이미 제정 시행된 농지개량조합법을 통해서 이제는 독립화 위치를 차지했고, 또 자율화되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이러한 뜻에서 농조법의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많고, 또 요구도 많습니다만 너무 그 요구가 많다 보면 뭔가 수렴할 수 있는 중심의견을 수렴하되 많은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미 상당히 많이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발점에서는 다소의 불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토대로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차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오다 보면 오히려 시행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점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40년 동안 농조의 발전상과 변천사항을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분석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대단히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

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집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지개발연구소의 안재숙 이사장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농업진흥공사에도 오래 계셨고 우리 나라 농공학회의 회장님도 하셨으며, 제가 알기로는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오랫 동안 농업토목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실제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 참으로 우리가 원로로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음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택실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박영택(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획실장)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획실장 박영택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993년부터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농림수산부 관계관과 농지개량조합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닌 농조자립육성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3년 9월 2일에 입법 예고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법안에 의하면 조합에서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의 매각대금을 농조자립육성금고에 납입할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의 매각대금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농조자립육성금고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육성금고 재원의 정부 출연금이 내년부터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액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정부출연금 없이는 기금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기금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어 농조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농조연합회는 물

론이고 정부관계부처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두분의 공무원이 오셨는데 먼저 강원도에서 오신 이항규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이항규(강원도 조성기획계장) : 강원도 조성기획계장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관계로 본인은 조합비 부과금의 수수료비율 문제와 금고조성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조합이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의뢰할 경우와 징수한 금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시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수료의 비율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1,000분의 4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시·군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교부를 할 때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비 수수료 체납징수에 대해 수수료를 1,000분의 4로 한다면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강제징수규정이 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에는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징수규정도 삽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도 수수료 체납자의 재산을 이미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되었거나 경매가 개시될 때 교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런 규정도 같이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농지개량조합법 제84조에 보면 금고조성의 조성재정의 하나로 정부가 금고에 재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안에는 아무 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금고조성재원의 방법론을 좀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충청남도에서 오신 지인수 계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지인수(충청남도 조성계장) :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충청남도 조성계장 지인수입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공청회를 갖게 해 주신 주최측과 농림수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모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동안 나름대로 느낀 점과 농조의 현실태에 대해 한 두어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 농지개량조합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의 빈약과 조직운영의 불합리 등으로 인해서 일부 농조에서는 머지 않아서 존립의 위기까지 예측되기 때문에 운영부실의 농조에 대한 병합 내지는 통폐합의 불가피성이 배가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전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설립기준입니다. 조합설립의 근본 목적은 농업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함을 그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고, 또 조합의 설립기준을 책정한다는 것은 바로 군소조합을 통폐합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농

조의 설립기준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첫번째 조합원 자격자의 수가 200인 이상, 두번째 수혜지구의 면적이 5,000m²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규모에 대해 잠시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충청남도에는 14개 농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합원수가 200인 미만인 농조는 한 개도 없고, 면적으로 볼 적에는 5,000ha미만의 농조가 약 7개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볼 적에 106개 농조 중 66%인 70개 농조가 5,000ha미만으로서 조합설립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안대로 확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70여개의 농조에 대한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조의 규모로 볼 때 전국 조합원의 수는 939,000여명이고, 관개면적은 542,000ha로써 조합원 1인당 평균 1.7ha 즉 약 5,000평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에 의한다면 1인당 관개면적은 약 25ha 약 75,000평으로써 1인당 관리면적으로 볼 때 농지의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에 제시된 조합의 설립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하였는지는 몰라도 조합원 1인당 농지면적의 관리능력 판단과 조합운영의 합리성을 재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구역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의 기준면적이 감소될 경우 빈번한 통폐합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예견되기 때문에 저는 수혜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인가면적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인수 등에 관하여 동법시행령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된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구역 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 제4조 제1항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조합에 이관함에 있어 인계자와 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고 재량행위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개량조합법과 동법시행령안상에 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한하여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항에 기증한 시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방조제, 제방시설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되는 시설 즉 담수호시설 등 주 수원공이 되는 시설이 포함 인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관리상 용수공급 체계라든지 용수관리권이라든지 용수사용료 부담 등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서는 농업기반시설에 한하여 규정하지 말고 담수용 등 관련 시설을 포함 인계인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인수 등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1항의 제2호에는 당해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당해 조합에서 시설을 인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재량행위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에서 사례를 든다면 대호방조제 및 담수호 시설인데 이것의 평야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충청남도에 관리를 이관했지만 방조제라든가 담수호는 지금까지 관리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와 충청남도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현재 농림수산부에 계류되어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량행위를 없애고, 의무규정을 두어서 당해 농지개량조합으로 인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어가지 말씀드리고 저의 토론을 줄이겠습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지정된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부박사께 토론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정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방금 소개받은 김정부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두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토론 내용은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저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작성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에서부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 이와 관련된 조합은 106개였지만 이 농지개량조합법의 시안은 106개 시안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여러 가지 시안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고통과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시안을 보니까 작년에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의 목적과 내용 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의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농지개량조합법 제13조에 규정된 경비부과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비의 부과문제는 조합원들이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서 노력을 부담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부담의 방법은 농지개량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안에는 천재지변 또는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조합원이 노력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배수로 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준설이라던지 수로의 제초 등과 같은 정기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노력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내용을 시행령에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의견을 내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지개량조합구역이 아닌 농지개량계와 기타지역에서는 수혜농민이 그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

력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조구역내와 농조구역밖을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최근에 와서 용배수로, 지선, 지거의 황폐화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몽리민들이 자기 농지에 급수를 하고 있는 농조의 수리시설을 전혀 들보지 않으니까 황폐화되는 점이 있고. 또 농민 조합원들이 그러한 노력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기가 속한 농지개량 조합에 대한 애착심이 줄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세번째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농업용수이용과 관련된 농수로의 관리는 대부분 수혜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도 이 부분은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용수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보조로 충당하여 농전수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 그 사람들도 역시 수리소조라는 조직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노력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조육성금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농조육성금고의 활성화 또는 내실화를 위해서 세가지를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농조육성금고의 기금 마련에 정부의 출연의무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농조법시행령안 제26조에 보면 육성금고에 납입한 각 농조의 지분권에 대한 연간 1%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이자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조육성금고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1조원인데 앞에서 어떤 토론자께서 이를 조성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출연의무가 명시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1조원이 될 때까지는 연간 1%의 이자 지급을 유보함으로써 기금조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안 제27조에 보면 금고의 보조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지원을 했을 때 30-40%를 보조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것은 농조법시행령안보다 보조율을 더 낮추나 아니면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전에 준비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내용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는 경향 각지에서 방청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되 중복된 것의 토론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분들 중에서 토론의 말씀하실 분은 어디에 계시는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

정태곤(여천농지개량조합 직원) : 전남 여천농지개량조합에서 온 직원 정태곤입니다. 먼저 농조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조법시행규칙안 제4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법시행규칙안 제4조에 보면 내용이 1, 2, 3, 4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농조법시행규칙 제5항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법시행규칙 제5항의 내용은 '일반회계 전년도에 결산상 재무구조가 전전하고 조합비 국고 보조금이 수익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40%미만 조합으로서 국고 보조금의 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예외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독립된 행정구역내에서 자주권과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자체 이익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흡수통합되는 퍼조합의 재산이 민주방식에 의거 통합조합의 조합원에게 자동 이식됨으로써 전전한 조합의 재산이 불건실한

조합에 유입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하는 의미는 전실한 조합이 불전전한 조합을 도와주는 방식에서 생각되어야지 불전실한 조합이 전전한 조합을 흡수합병하여 덕을 바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1981년도에 저희 여천농지개량조합이 군소조합 합병 방침에 따라 가지고 순천농지개량조합으로 통합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경비절약책으로 합병이 되었으니 3년이내와 기구와 예산이 방대하여 소정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증빙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 직원 13명으로 충분히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전실한 조합이었으나, 통합 이후 출장소로 전환되면서 출장소 직원이 4명정도로 축소되고, 4,000여 조합원에게 직접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히 결여 되었습니다. 여천농지개량조합이 출장소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전한 조합이 빈약한 조합으로 몰락되었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만 비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조합원이 반발하여 다시 독립되고 4년이 지난 지금 여천농지개량조합은 조합비 보조금 25%정도로 조합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있어 꼭 통합만이 만능이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하여서 조합과 조합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말씀하실 분은 없습니까. 뒤에 계신 분 말씀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방청자 1 : 농조연합회 박영택실장님이 말씀한 특별부가세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박실장이 말씀한 특별부가세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납부금액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농조비율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농조에서 특별부가세를 낸다면 농조에서 찾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쪽에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자2 : 농조법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는데 여기와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새삼 여러 가지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북농조의 조합원입니다. 여러 토론자들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슴에 닿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지분 이자율을 영산강농조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두번째, 금강농조조합장이 말씀하신 제32조 제2항에 의한 농조연합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금강농조조합장님께서 금고재원조성에서 정부의 출연의 명시 이런 것들 또는 자체 자금으로 된 부동산매각대금 출자를 삭제해 달라 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조합원이 조성한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매각되어 가지고서 그 일정 부분을 낸다고 하면 아마 이사회나 현재 총회에서는 모든 부동산 매각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조법 126조에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조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에서 말씀이 안 나왔는데 농조법 제126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함으로써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이 그런대로 어떤 수혜가 있다고 생각하여 혼쾌하게 자진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랄지 또는 이와 같은 어떤 보조하는 이런 것

들이 서로 도움이 되어 가지고서 농조자립금고 육성이 원활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모두 11분이 토의를 했습니다. 농민대표인 조합원 2분, 조합장 2분, 농조직원 2분, 관계 공무원 2분, 그리고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전문가 3분과 방청석에서 3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고, 또 관계관이 지금까지 모두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토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발표자 :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당부에서 마련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매우 값진 토론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좋은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진행자 : 이상으로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참가자 명단

1. 사회 : 강정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 주제발표 : 강동제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 개발기획과장)
3. 토론자 : 김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성 (의성농지개량조합 이사)

박명영 (하동농지개량조합 전무)

박선우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농지개량조합위원회의장)

박영택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획실장)

안재숙 (농지개발연구소 이사장)

유갑현 (옥천농지개량조합장)

이규현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이사)

이항규 (강원도 조성기획계장)

전종철 (금강농지개량조합장)

지인수 (충청남도 조성계장)

(이상 가나다 순)

연구자료 D118

농지개량 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검토

찍은날 1996. 5 펴낸날 1996. 5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